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

【제정 2018. 1. 15.】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당직의 구분) 당직은(재택당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일직과 숙직으로 구부한다.
 - 1.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
 - 2.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.
- 제3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 당직근무자는 직원 1명 이상의 정규직(일반직 및 무기계약직)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그 시설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당직을 명할 수 있다. 단, 당직을 경비용역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당직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② 현장 당직근무자는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.
 - ③ 특별 경계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명할 수 있다.
 - ④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거나, 이사장이 숙직
 - 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는 재택당직근무 등 별도의 당직을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재택당직근무) ① 이사장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모두 마련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
 - 2.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강구
 - 3.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을 초과해 사무실 대기근무가 필요할 때
 -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,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근무일지(별지 제1호 서식), 이동전화, 공단전화번호부, 기관 간

비상연락체계, 직원비상연락체계 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,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, 서류 및 비품수령, 인계 등은 일반당직과 같다.
- 제5조(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 직을 유예한다.
 - 1.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7일간
 - 2. 휴직직원의 휴직기간
 - 3. 직위해제직원의 직위해제기간
 - 4. 상병중인 직원의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
 - 5. 휴가직원의 휴가기간
 - 6. 임신중이거나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의 본인 요청시
 - 7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
- 제6조(당직명령 및 변경)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 -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, 휴가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부(별지 제2호 서식)을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대직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당직신고 및 인계인수)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 근무 주관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,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, 전보 및 그 밖에 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한 후 당직근무 종료시 당직근무 주관팀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- 제8조(당직실 비품)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 - 1. 당직근무일지(별지 제1호 서식) 및 당직명령부(별지 제2호 서식)
 - 2. 직원 비상연락망도 및 비상연락전화부
 - 3.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
 - 4. 각 사무실 열쇠
 - 5. 당직근무수칙(별표)
 - 6.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
- 제9조(책임)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.
- 제10조(일반업무)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,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역에 방지하여야 한다.
 - 1. 방범·방호·방화나 그 밖의 보안상태 수시 순찰·점검
 - 2. 보안근무자나 그 밖의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
 - 3. 현장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
 - 4. 문서의 수발·인계 또는 관리
- 제11조(긴급사태시 임무)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관할소방서와 이사장,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우선 연락
 - 2. 청사내의 화재경보
 - 3.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
 - 4.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
 - 5. 중요문서의 반출
 -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관할경찰서와 이사장,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우선 연락
 - 2.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

-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장과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당직근무 요령)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,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당직근무 중에는 지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.
 - 2. 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팀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- 3.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보고한다.
 - 4.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주관팀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상황을 인계·인수한다.
 - 5.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장치, 비상전화,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당직점검) 이사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- 제14조(금지사항)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.
 - 1. 음주, 도박, 그 밖에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
 - 2.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
 - 3. 그 밖의 당직 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
- 제15조(숙직근무자의 휴무) 숙직근무자(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긴급한 민원처리,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일직·숙직 수당)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제17조(연락처 등 신고)

- ① 신규채용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당직근무 주관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하는 즉시 비상연락망도를 정비하고 비상연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제18조(벌칙)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「사천시 시설 관리공단 인사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당 직 근 무 수 칙 (제8조관련)

- 1.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 야 한다.
- 2.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공단 청사 내·외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한다.
- 3.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,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순찰시에는 당직근무자 1명은 반드시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.
- 4.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청토록 한다.
- 5.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팀 의 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6. 당직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」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7. 당직근무자는 차량 입·출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8. 당직근무자는 현장 근무상황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- 9.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 주관 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날씨() ^{결 담당} 요일 (일·숙직) 재

	당직명 소속 직명 성명			인	문 서 처 리 상 황						
당	책임자						발 송				
당 직 자	당직원					문서번호	수신처	제 목	접수	인계	비고
	당직원										
지시 받은 사항			조치 사항								
지시			조치			특 근 자 현 황					
사항			결과 확인			소	속 팀	인식	원 수	특근	시간
보고 사항			인계 사항	1.물품 2.문서 3.기타				9	명 명 명 명		
			청사	내 · 외 등	는 찰 7	점 검 /	사 항		-1		
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순 찰 자 처리개요 순 찰 자			순 찰 자	순:	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				순 찰	자	
시 시	분부터 분까지				시시	분부터 분까지	;] ;]				
시 시	분부터 분까지				시시	분부터 분까기	;] ()				
. 1-	-1.1.	.1 =1 =1	2 -1		- 사 힝		2 -1 1 \	1_1		1114 11	
연락사항 연락처		수화자 소속 직명		수화자	수화자성명 송회		·자성명 ·		이상유무		
				차 량 입 고 현 황							
특기 및 기타사항			차	차 량 번 호 입 고 시 간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당 직 명 령 부

월/일 당직명	당직자	당 직 자			대 직 자			대직	
		직 급	성 명	서 명	직 급	성 명	서 명	대직 승인	
/ ()요일 일·숙직	당직책임								
	당직원								
/ ()요일 일·숙직	당직책임								
	일・숙직	당직원							
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/ 일.숙	()요일 일·숙직	당직원							
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/ ()소	()요일 일·숙직	당직원							
/ ()요일 일.숙조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	일・숙직	당직원							
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/ ()요일 일·숙직	일・숙직	당직원							
/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/ ()요일 일·숙직	일·숙직	당직원							
/ ()요일 일·숙직	()요일	당직책임							
	일·숙직	당직원							
/	()요일 일·숙직	당직책임							
	일·숙직	당직원							
/	()요일 일·숙직	당직책임							
/		당직원							